

제6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제주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주류화 전략'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향상 및 내실화 방안 모색

일시 2020. **10. 6.** (화) 15:00~17:00

장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개원 초기인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해 제주지역 성인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6번째를 맞이하는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은 지방 차원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8년 차를 맞아,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장과 도약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통계,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성평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도구입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점검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 취지에 같은 뜻을 가지고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 성평등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발제를 위해 멀리서 달려와 주신 김희경 한국성인지 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님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빛내주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좌장이신 이경선 제주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제주여민회 상임대표님, 토론자이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의원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과 좌재봉 예산총괄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해주신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포럼을 추진하게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니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에서 다채로운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제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여러분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지역을 변화시키는 성 주류화 전략을 정립하기 위한 ‘제6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 전반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도입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양성평등위원회 등은 물론, 2018년 신설된 제주 성평등정책관은 성 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효과에서는 운영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양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성 주류화’를 통해 제주 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활성화와 확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전체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정책은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향상 및 내실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펼쳐지는 포럼을 통해 우리지역 성인지정책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전 포럼을 통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포럼 준비에 애써 주신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여러분, 토론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향상 및 내실화 방안 모색

일시 2020. **10. 6.** (화) 15:00~17:00

장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yDLPFXEG_I2Xgaape1NrQ

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14:50~15:00	《등록》
1부 개회식	15:00~15:10 (10')	<p>《개회사 및 축사》</p> <p>사회: 김민선(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축 사: 양영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2부 포럼	15:10~15:45 (35')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과 과제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15:45~16:50 (65')	<p>《토론》</p> <p>좌장: 이경선(제주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좌재봉(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16:50~17:00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발표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1
-------------------------------------	----------

▶ 김희경(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발표 2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15
----------------------------------------------	-----------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토론	37
-----------------	-----------

좌 장: 이경선(제주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좌재봉(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발표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KNGB 상임대표 김희경
2020.10.06.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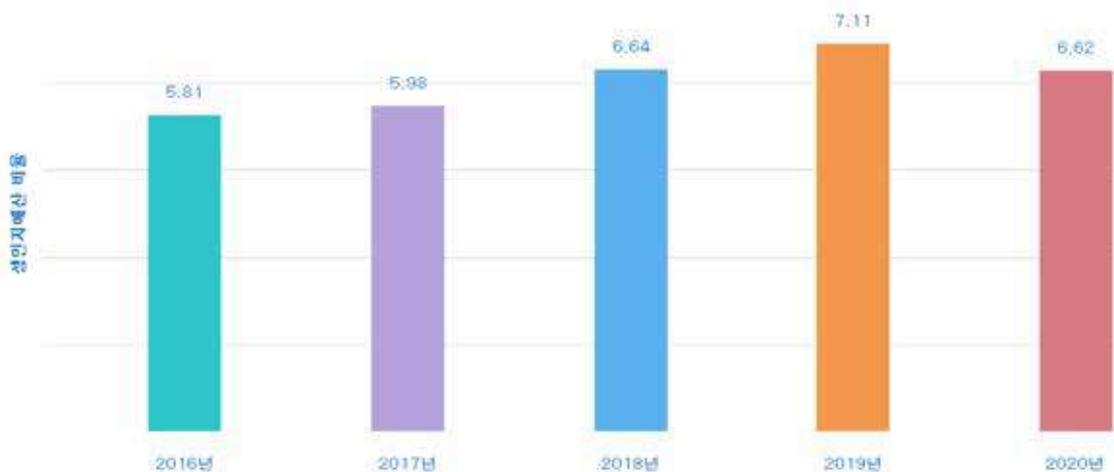
목차

- 1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특징
-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운영 현황과 문제점
- 3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특징

1. 재정운용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2. 예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부속서류로서
3. 각 사업에 대한 성별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성별배분 형평성을 주요 분석기준으로 하는 작성양식을 갖고 있다.
4. 예산서 형식에 성평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5. 결산서 형식으로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 수준을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5년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규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광역자치단체 2020성인지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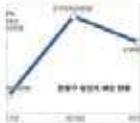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경남본청	1,653,963	9,999,440	16.54
울산본청	520,061	4,401,891	11.81
대전본청	669,631	6,782,712	9.87
경북본청	1,003,650	10,893,557	9.21
충북본청	517,470	5,740,887	9.01
경기본청	2,750,142	31,737,661	8.67
부산본청	1,186,692	13,780,452	8.61
충남본청	631,046	7,783,569	8.11
인천본청	929,880	11,920,554	7.80
전북본청	589,402	7,826,159	7.53
서울본청	3,025,020	41,984,488	7.21
전남본청	427,320	9,305,126	4.59
강원본청	260,954	7,443,524	3.51
대구본청	346,171	10,920,690	3.17
세종본청	44,873	1,760,325	2.55
제주본청	144,503	6,758,075	2.14
광주본청	57,236	6,140,721	0.93

기초자치단체 2020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울산동구	133,144	295,550	45.05
울산북구	119,328	380,782	31.34
서울중랑구	208,150	788,607	26.39
전남함평군	104,541	403,587	25.90
전남화순군	144,838	575,703	25.16
전남광양시	192,908	1,064,972	18.11
경기김포시	266,792	1,492,268	17.88
광주남구	63,739	419,172	15.21
전남나주시	112,682	801,552	14.06
광주광산구	94,476	679,871	13.90

뉴스 정확도 · 최신



'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성인지 예산? 은평구 성인지 예산 운용실태

2020.09.01 오마이뉴스 다들뉴스

지적을 받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 전국 지자체서 얼티리 운영 2020년 은평구 성인지 예산은 세출예산액 약 8,663억 원의 1.13%에 해당하는 약 97억 4900만 원이다. 2016년...



전북지역 의원 성인지예산 워크숍 가졌다 2020.08.25 전북도민일보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소장 이수인)는 25일 오후 2시 '전북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성인지예산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김희경...

전북연구원, '도·시군의원들과 함께하는 성인지예산' 2020.08.26 시사타임즈

[전북연구원] 도·시군의원들과 함께하는 성인지예산... 2020.08.25 투데이안

전북연구원, 도·시군의원들과 함께하는 성인지예산 ... 2020.08.25 케이एस피뉴스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

광주,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실시 2020.08.24 서울매일

유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21일 시청 행복나눔실에서 2020년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과제 60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 1 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광주시,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2020.08.23 광남일보

광주시,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실시 2020.08.23 대한뉴스

광주시,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실시 2020.08.23 뉴스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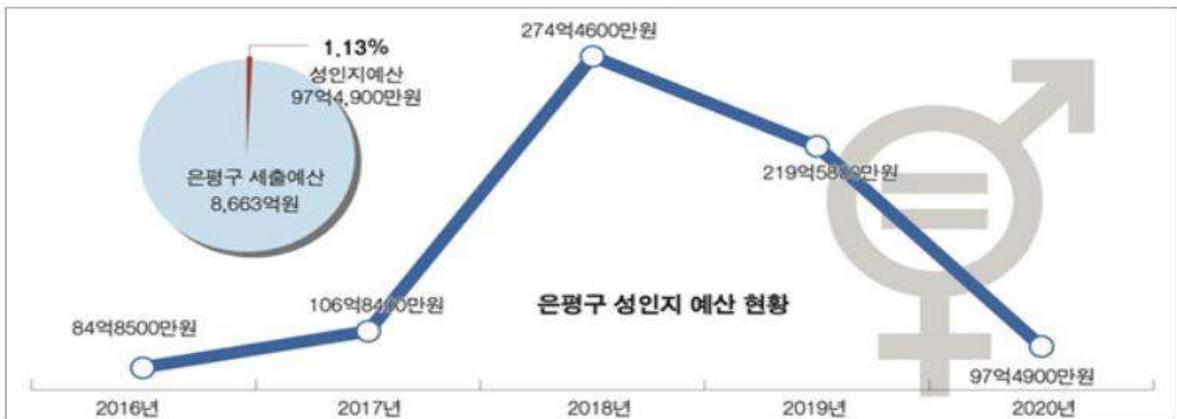
관련뉴스 15건 전체보기 >

기초자치단체 2020현황

'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성인지 예산? 은평구 성인지 예산 운용실태

성인지와 무관한 사업, 다수 포함...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발의

20.09.01 16:22 | 최종 업데이트 20.09.01 17:44 | 은평시민신문 이해람(epnews) [v]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에서 자주 확인되는 문제들

1. 성인지예산제도 수용성 확대 문제
 - 제도의 효용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가
 - 성인지 예결산서의 정보가 정책 주체들에게 자주 인용되는가
 - 젠더 이슈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통계(성인지 통계)가 정책영역 별로 충분히 개발되고 있는가
2. 성인지예산서 부실 작성의 문제
 - 대상사업 선정이 적절한가(선정 절차와 결과 모두)
 - 성별수혜격차분석(대상자 수혜자 성별분리통계 포함)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타당한가
3. 예산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화 문제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사항은 성인지 예산서에 바람직한 형태로 수렴되고 있는가
 - 성인지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이나 신규사업 발굴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4. 제도 운영과정에 시민(여성) 참여 절차 부재의 문제
 - 젠더 거버넌스 관련 규정이 조문화되어 있는가. 구성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가
 - 지자체는 NGO의 성인지 예산결산서 모니터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가

▶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의 기대효과

A. 정부 재원이 성 평등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성별요구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목적]**

B.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함으로써 **[방법]**

C.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절차(과정) **[수단]**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

- 규모 검토는 객관적 비교 가능 지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석과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됨. 이는 대상사업 적절성 문제를 논쟁 지점으로 끌어 오는 주요 출발점이 되기도 함
- 대부분의 성인지예산서 분석과 심의에서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옴. 그런데 부적절하다고 구분하는 사유가 분석자나 심사자마다 다르고, 동일한 분석자가 같은 보고서에서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님
 - 예를 들어, 최근의 성인지 예산분석 보고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도시재생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사업(19억3,265만원)'을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불특정다수 대상사업으로 특정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으로 밝혔다. 반면에, 부산 금정구의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5억3226만원)'은 이 또한 특정 성별을 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 없이,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선정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결과로 2020년 성인지예산서 규모를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음
- 모든 예산사업을 규격화된 틀에 넣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없으므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이 제도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한다는 원칙에 각 주체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임

2. 성인지예산서 부실 작성의 문제 가)사업유형 구분 오류 사례

부서명	사업명	구분	예산액 (백만원)
노인정책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양평	13,052
노인정책과	노인여가시설 운영	양평	11,584
노인정책과	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양평	11,280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위탁관리	양평	5,040
건강증진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양평	3,713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역량제고	양평	3,446
자원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추진	양평	1,986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양평	1,983
노인정책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양평	1,470
청년정책과	창업보육 지원	양평	1,100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양평	1,039
노인정책과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운영사업	양평	188
여성정책과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성별	88

3. 성과달성도 평가의 문제

[사업명 : 직업훈련] 2019성인지예산서 정보

사업내용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0예산액(백만원)		783	사업유형구분		성별영향평가사업
대상자	정의	관내인구	수혜자	정의	훈련 구직자 및 재직자
	2018여성(명)	1,495,188		2018여성(명)	520
	비율(%)	49.7		비율(%)	14.9
성별격차원인분석		00지역 중소기업 채용인력 및 필요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과 연계한 직업훈련으로 훈련생 모집과정에 성별격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여성보다 남성 훈련참여도가 높은 실정임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성훈련수료 실적			
	목표치	2017년 실적	2018년 추정치	2019년 목표치	
		908명	520명	530명	
기대효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을 향상에 기여			

출처: 00광역시 2019성인지예산서

3. 성과달성도 평가의 문제

[사업명 : 직업훈련] 2020성인지예산서 정보

사업내용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0예산액(백만원)		783	사업유형구분		성별영향평가사업
대상자	정의	관내인구	수혜자	정의	훈련 구직자 및 재직자
	2019여성(명)	1,504,487		2019여성(명)	530
	비율(%)	49.9		비율(%)	20.6
성별격차원인분석		00지역 중소기업 채용인력 및 필요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채용과 연계한 직업훈련으로 훈련생 모집과정에 성별격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여성보다 남성 훈련참여도가 높은 실정임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성훈련 수료율			
	목표치	2018년 실적	2019년 추정치	2020년 목표치	
		23%	22%	22%	
기대효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을 향상에 기여			

출처: 00광역시 2020성인지예산서

3. 성과달성도 평가의 문제

[사업명 : 직업훈련] 2019성인지결산서 검토

사업개요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0예산액 (백만원)	758	사업유형구분	성별영향평가사업											
집행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원별</th> <th>예산액 (A)</th> <th>예산성립수 증경(B)</th> <th>예산현액 (A/B)</th> <th>지출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758,200,000</td> <td>0</td> <td>758,200,000</td> <td>758,200,000</td> </tr> </tbody> </table> <p>○ 예산현액대비 집행실적 분석 -집행률: 100.00% -집행실적 분석: 인적자원개발위 원회 인건비, 운영비 지원</p>				재원별	예산액 (A)	예산성립수 증경(B)	예산현액 (A/B)	지출액	계	758,200,000	0	758,200,000	758,200,000
재원별	예산액 (A)	예산성립수 증경(B)	예산현액 (A/B)	지출액										
계	758,200,000	0	758,200,000	758,200,000										
성과목표 달성 현황	회계연도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2018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고용률 향상에 기여	520명	777명										
	2019	여성훈련수료인원	530명	684명										
성평등 효과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 사업수혜자 ○ 예산현액 및 지출액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에 대한 원인: 여성대상 직업훈련 계획인원(530명) 대비 우수한 실적(684명) 달성함 ○ 향후 개선사항: 미작성 													

출처: 00광역시 2019성인지결산서, 사업집행내역

제도 활성화 방안?

➡ 제도 운영 성과 증진 방안



성과 증진 방안

1. 각 정책영역별 성인지 통계 생산과 보급(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제도 수용성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확대
3. 책임 있는 부서(예산담당부서)에서 제도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 적극적 실행 의지를 갖추어야 함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관리 강화. 성인지예산서의 성별정보 및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함
5. 시민, 시민단체의 참여역량 강화와 기회확대 및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활동 지원
6.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7. 제도(양식, 절차, 방법 등) 보완사항 종합적, 확장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감사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발표 2

⋮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과 과제

Contents

- | 성인지예산제도 개요
- | 제주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
- | 제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 | 향후 과제

성인지예산제도의 배경

▶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mainstreaming)' 전략 채택

- '성 주류화'란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관점의 통합 전략'임
 - * 주요 정책 도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적 관점'
- 한국사회는 2000년대 초부터 성주류화 전략을 도입·시행하고 있음.
 -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단체의 예산 운동 일환으로 출발, 2006년 법제화 되면서 그 기틀을 마련함.

▶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전략 추진 기반 구축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목적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2007.1)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부 개정(2015.12.31.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2005년~) 및 조례 제정(2014.8)
- 성인지 예산 추진(2013년~) 및 조례 제정(2019.7)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정의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기획재정부,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필요성

사전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산사업의 결과가 성별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미치게 됨.
성인지예산제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으로 성평등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개발·시행하고 있음

기대효과

예산편성에 성별로 다른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심의와 집행 평가 등 전체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예산의 투명한 운용은 물론, 재원을 형평하게 배분하고 성별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게 됨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국가재정법 제26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수행구조 연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의회 심사·의결
연도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의회 심사·승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국가재정법 제57조,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 · 결산 대상사업 기준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세부사업
- 대상사업 유형

대상사업	비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⁶⁷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자료: 행정안전부(2020),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법적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2019.7.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서관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교육)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2019.7.31. 제정)

제7조(주민 참여 및 교육)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예산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 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정책·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 내실화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및 교육, 4. 성인지 예산의 정책분야·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5. 대상사업별·사업유형별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 영향 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자치도”라 한다)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지 예·결산 분석·평가, 2.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 예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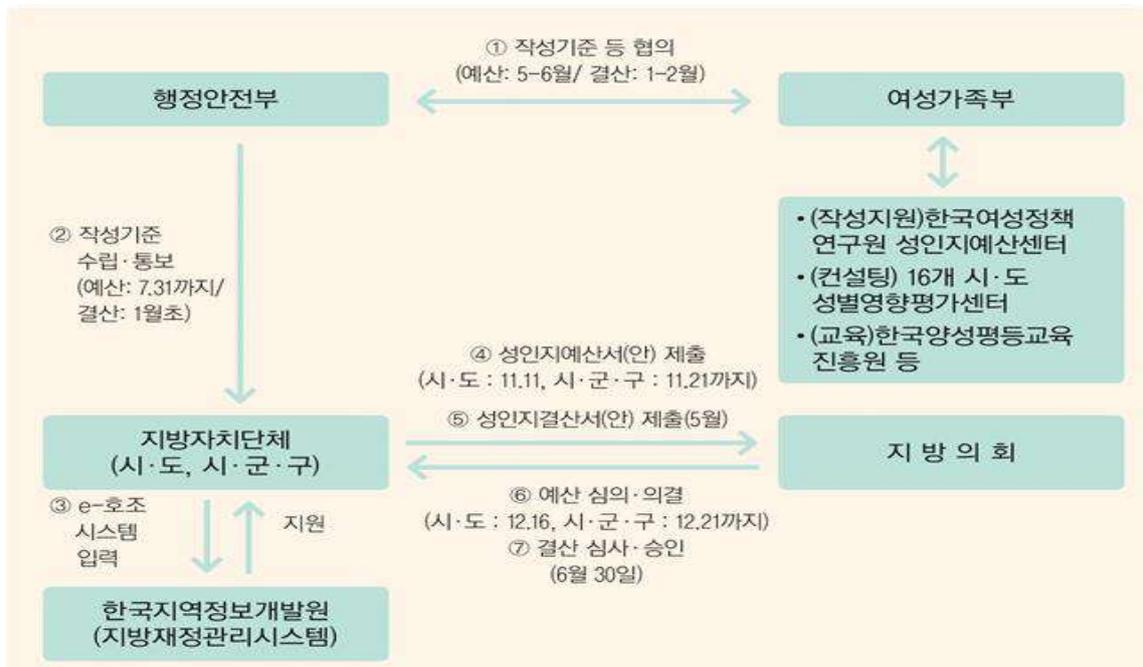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포상자 선정,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추진상황 공개)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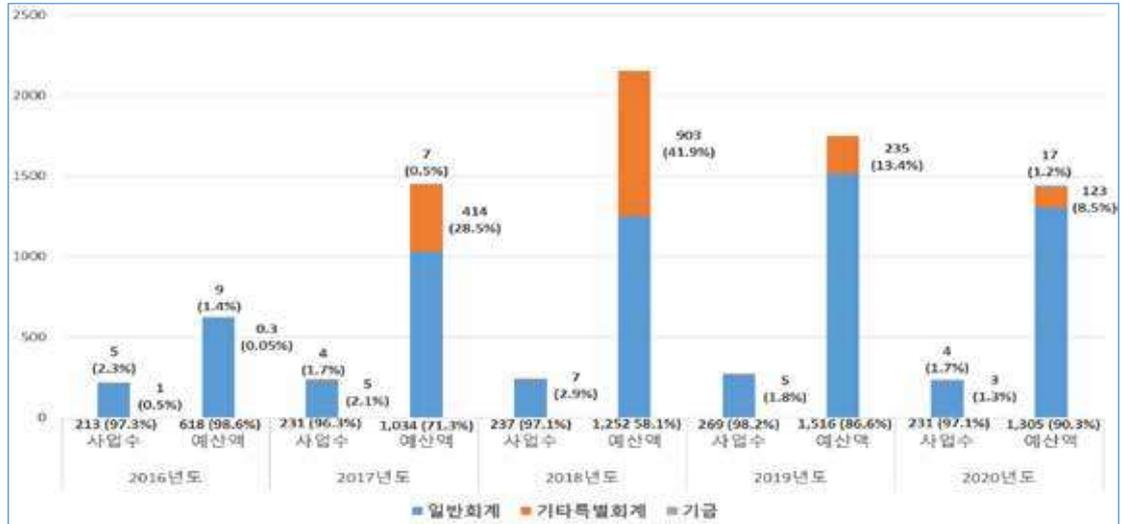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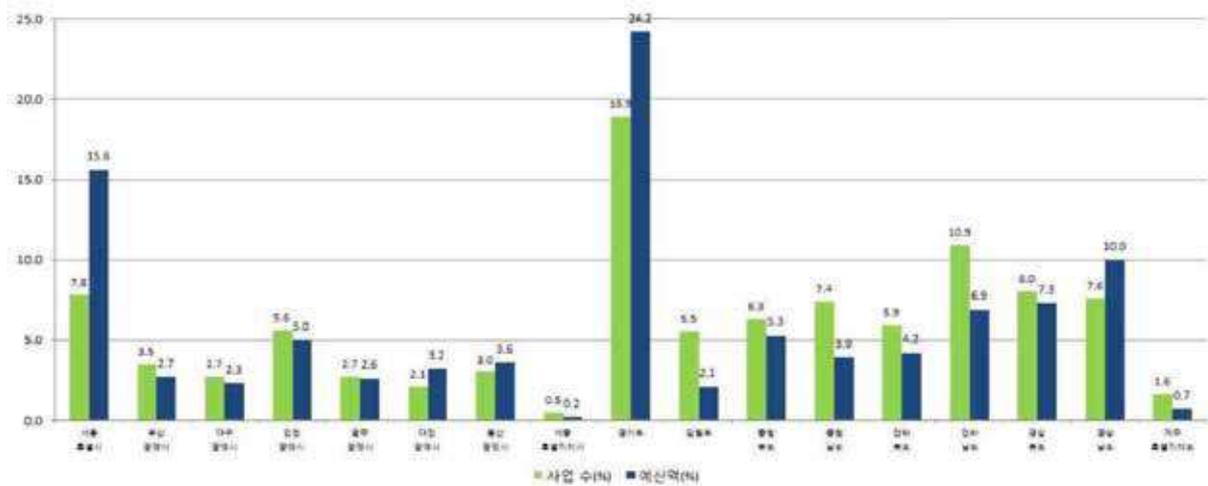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추이(2016~2020)>

(단위: 개, 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현황

<2019년도 시도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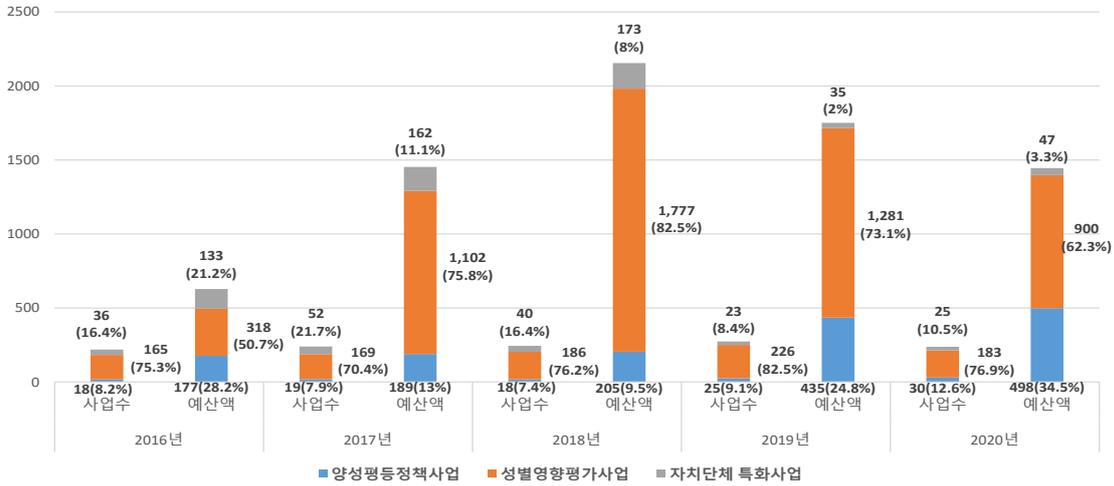


*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DB.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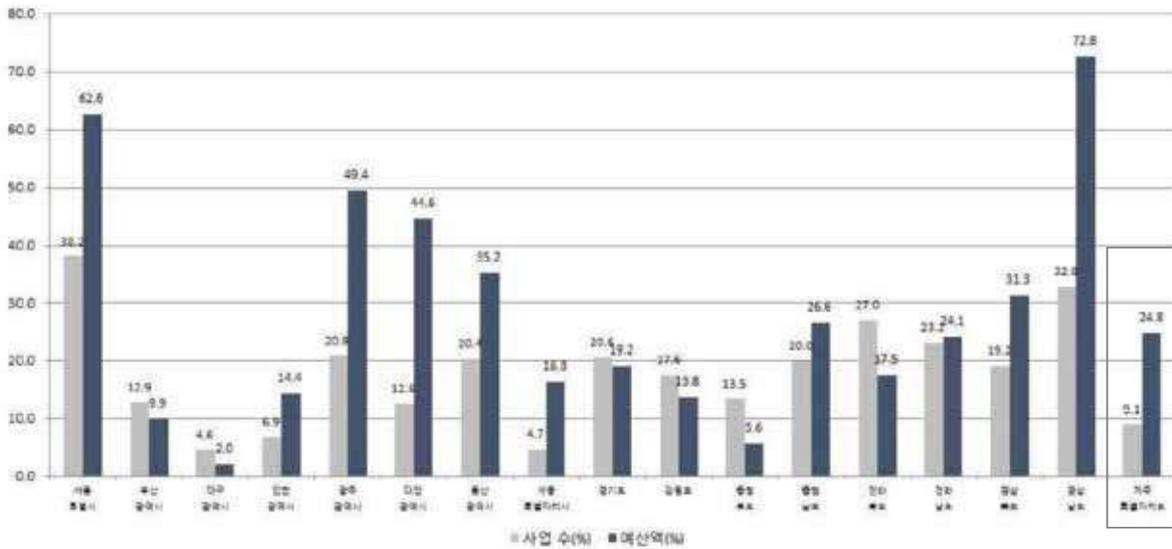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2016~2020)>

(단위: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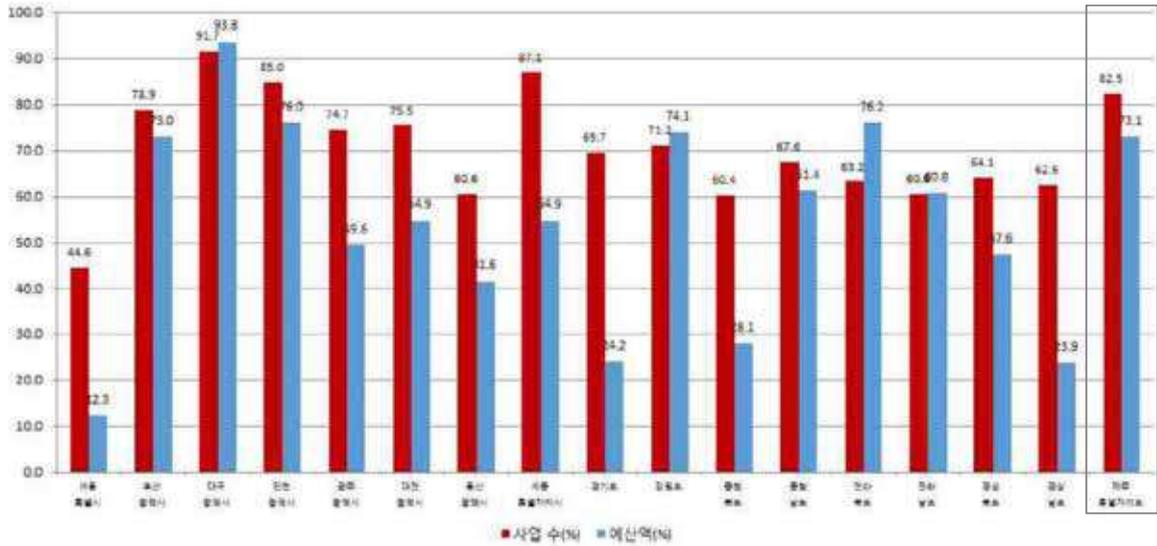
2019년 시도별 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사업 비중

- 양성평등정책사업 예산 비중이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시(62.6%), 경상남도(72.8%)임
- 제주도는 사업 수는 9.1%, 예산액은 24.8%로, 개별 사업의 예산액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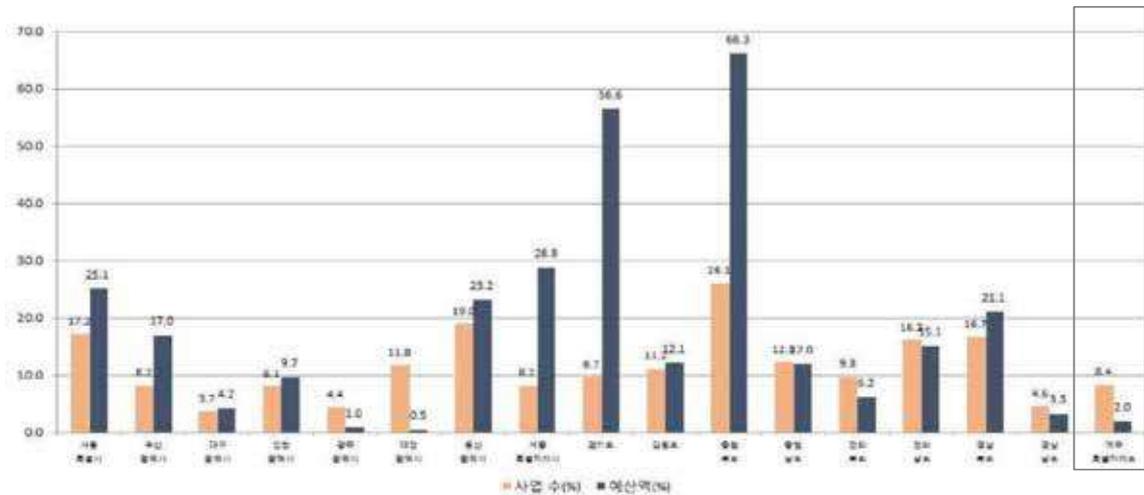
2019년 시도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사업 비중

- 성인지예산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 제주도는 사업수에서 82.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예산액으로 보면, 천만원 이하 소규모예산 사업 도 다수 선정되고 있음



2019년 시도별 성인지예산 자치단체특화사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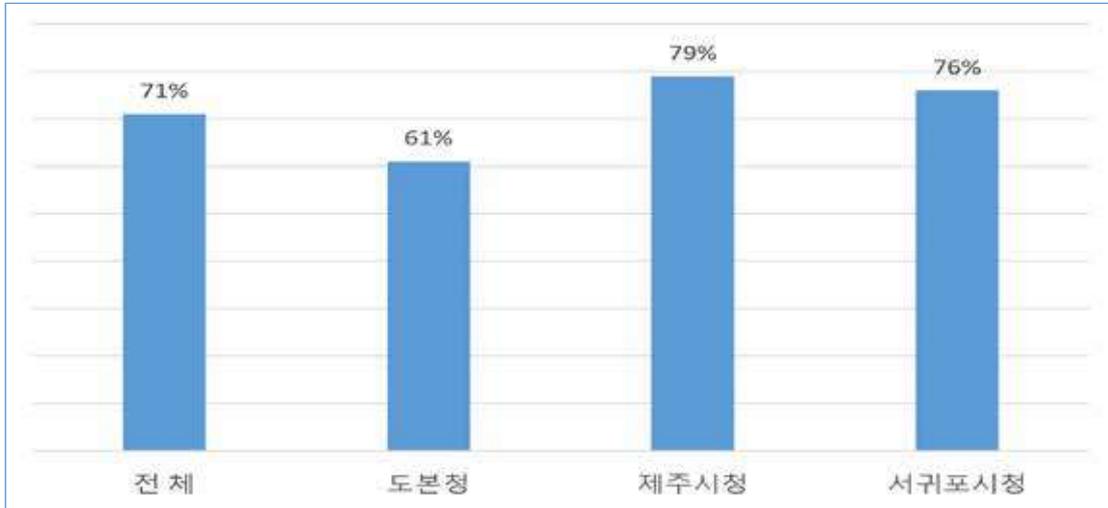
- 성인지예산 사업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 충북, 경기도의 경우 사업 수에 비해 예산액(충북 66.3%, 경기도 56.6%)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 사업의 예산액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DB.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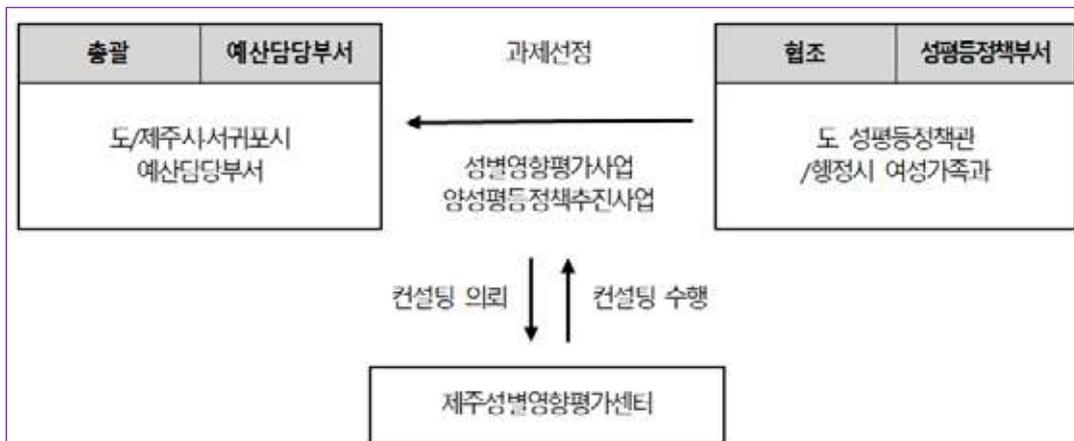
<’20년 회기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부서별) 성인지예산 추진율>



성평등목표 및 대상사업 선정 추진체계

대상사업 선정 추진체계 및 절차

- 지방 성인지예산 성평등목표 수립은 절차적으로 예산부서와 성평등정책담당부서의 주관 하에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협업의 어려움이 있음
- 대상사업 선정 시에는 예산부서와 성평등정책부서가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음. 성평등정책부서인 성평등정책관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사업 목록을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에 전달하고, 예산담당관은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 별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전체 대상사업을 확정함



성평등목표 및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 사항

- 중장기적 성평등목표 수립 및 성과 관리 필요
-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 및 3년 이상 장기적인 추진 필요
- '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의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분야 등 다양한 기능분야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대 필요
- 기관별 성인지예산 미 추진 부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서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발굴 필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제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예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사업 1천만 원 미만 - 신규사업 5천만 원 미만 사업(양성평등정책사업 및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유형만 해당)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 2020년 성인지예산 사업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의 지속적 장기(3년 이상) 추진을 통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및 성별 수해분석 정보의 성인지통계 축적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2019-2022)'의 사업 중 성인지예산 목표별 대표 사업 선정 • 성별영향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21년 회기)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신규 추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통과(20. 6. 25) •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평등 수준 및 기능별, 조직별(부서별) 미 추진 부서를 고려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분야 등 신규 발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관별 공통적이거나 장기간 미 추진 부서: 회계세무과(자치행정국), 위생관리과(복지위생국), 제주아트센터서귀포예술의전당관광지관리소(문화관광체육국),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청정환경국), 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안전교통국·안전도시건설국), 소방정책과구조구급과(119종합상황실(소방안전본부))</p> <p>※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유형과 선정 기준의 차이가 거의 없음. 단 시기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선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상반기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내년엔 신규 추진되는 사업 중 도지사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편성</p> </div>

* 자료: 강경숙·신승배(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무원 성인지예산교육 현황(2013~2019)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예산교육이 별도로 추진된 시기는 2013년으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수요 발생함(강경숙, 2016)
- 2013년을 제외,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8월경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에 1시간가량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시횟수	2	1	1	1	1	1	1
교육인원	384	239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3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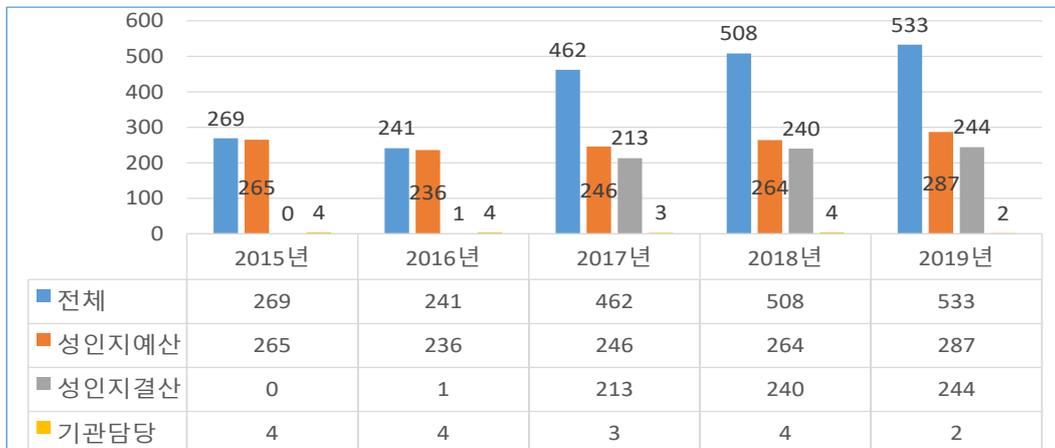
* 자료: 2013년~2015년(강경숙, 김민선(2016), 2016년~2019년(제주여성가족연구원 내부자료)

공무원 컨설팅 현황(2015~2019)

-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 부터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나,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컨설팅은 2017년 부터 추진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예산 컨설팅 현황(2015~2019)>

(단위: 개)



* 자료: 각 년도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무원 컨설팅 연황(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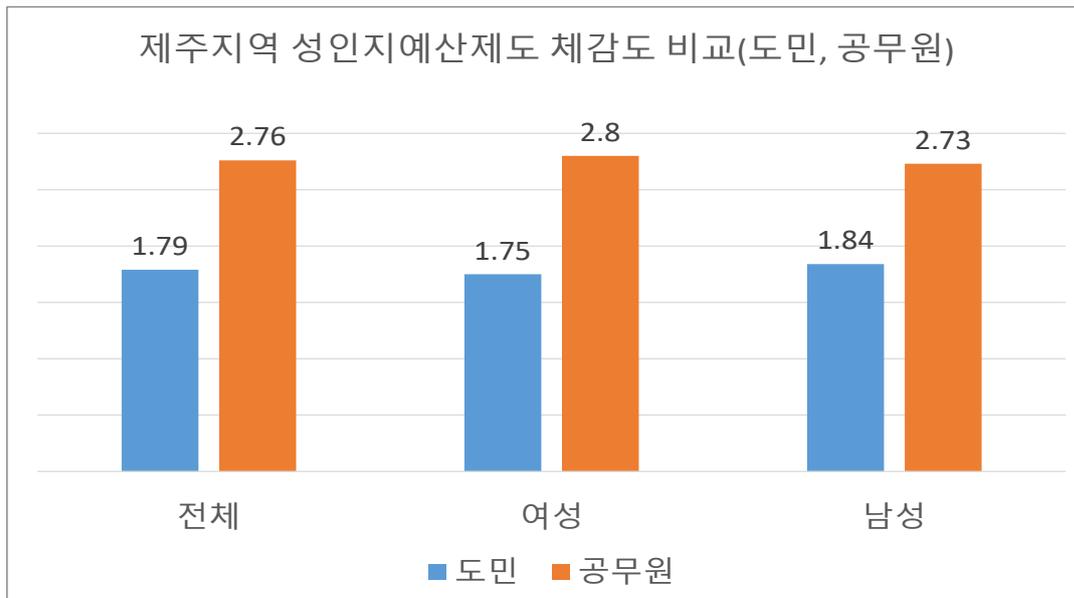
-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대면 컨설팅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면 방법 중심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예산 컨설팅 방법별 지원 현황(2015~2019)>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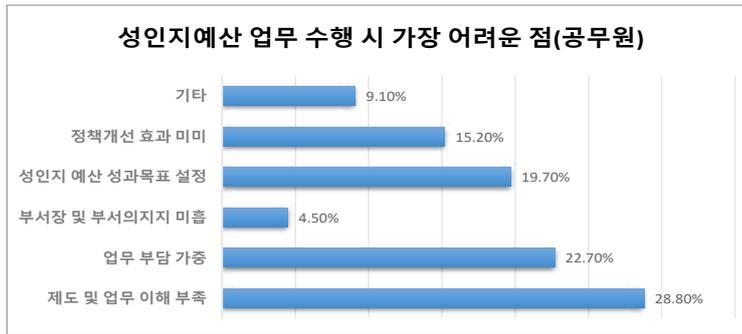
* 자료: 각 년도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인식



- 자료: 이해응·신승배(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4점 척도 문항으로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체감도가 높음. 조사대상자 도민 606명, 공무원 4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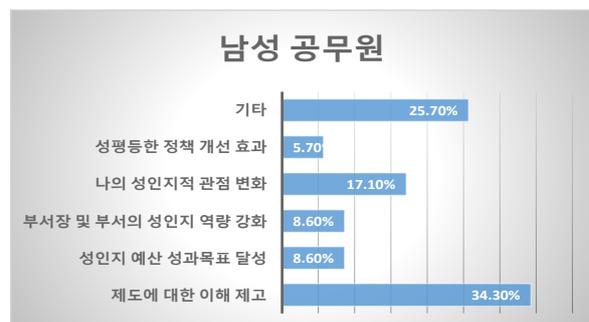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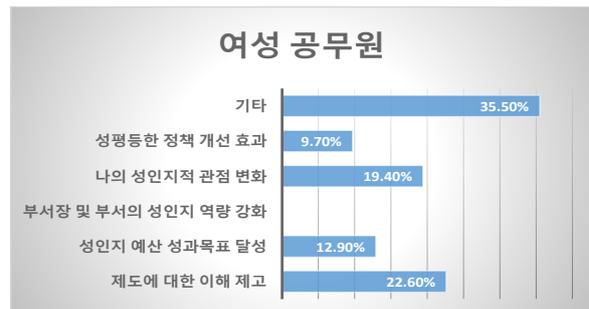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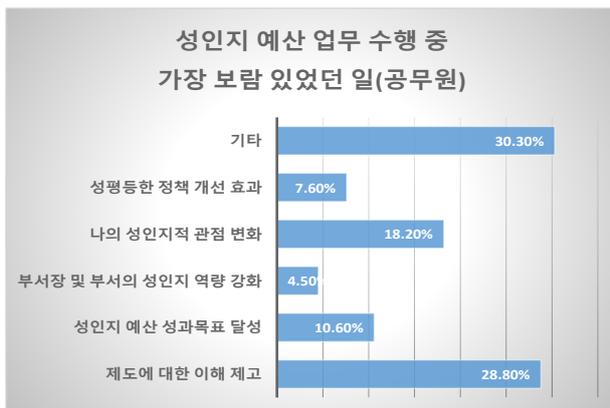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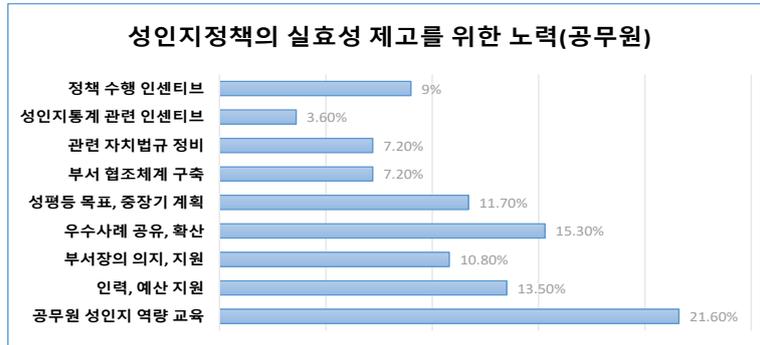
- 자료: 이해응·신승배(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 N=31명, 남성 N=35명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인식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인식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체계 강화

-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부서의 역할 정립**
 - 예산부서: 성인지예산제도 총괄 운영, 성인지예산 편성,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
 - 양성평등정책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대상 선정 및 성과목표 등 성별영향평가 연계 추진, 성인지통계 및 성인지교육 운영 등
 - 부서(양성평등담당관): 부서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 및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 * (현황) 양성평등책임관(기획조정실장) → 운영총괄(성평등정책관)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 지정(도청 및 행정시 186개 부서)
- 성주류화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무추진단 운영**
 - 성평등목표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 등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예산담당관(회계과), 여성가족청소년과+지원기관 등의 실무협의체 운영
- 인센티브 지원 및 성과 관리 반영**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및 성인지정책 과제 이행을 부서장(부서) BSC 반영
 -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추진체계 강화

-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0조~15조)
 - 운영계획, 성과 분석, 대상사업 선정 등 심의
- ‘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설치(조례 9조)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계 강화
 - 제도 분석 평가,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 도 현안 지원 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9월 출범)’ 연계를 통한 성인지예산교육 강화

의회 심의 역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의정 역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기본 조례(‘19.7.10)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제9조. 성 주류화 조치/제10조. 의원 제개정 조례 및 규칙 성별영향평가/제11조. 성인지교육/제15조. 성평등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주민참여 및 홍보

- ‘알기 쉬운 제주 성인지예산’ 등 홍보책자 발행 및 제도 추진사항 홈페이지 공개(조례 16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에 성인지예산교육 포함(조례 제7조)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젠더 거버넌스 강화

- 학계, 시민사회, 의회, 언론,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 등 참여 주체와 정책 영역을 확장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 제주지역 성평등정책 목표, 성평등 의제 및 중점 과제 발굴, 정책 개선 및 환류 모니터링 등의 예산 및 정책 과정에 거버넌스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운영 방안

단 계	주요 내용		담당
예산 편성 단계	성별동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정책 수요, 자치단체장의 성평등 관련 공약사항, 저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 • 주기: 성별 상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 • 방식: 지역주민 수요조사, 전문가 조사, 민관 네트워크 등 	(총괄)예산부서 (협조)양성평등정책부서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 기준: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고려, 출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자체 선정기준 마련 • 절차: 과제 선정에 대한 부서별, 시민 의견 수렴 → 대상과제 선정 → 관련 위원회 심의확정 • 성별동정책관은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예산담당관에 제출하고 예산담당관은 사업부서 및 성별영향평가센터 등과 협조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총괄)예산부서 (협조)양성평등정책부서 각 사업부서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건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결산서 평가 결과와 실적치를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총괄)예산부서 (사업)각 사업부서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의회 제출/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심사 및 도민 모니터링 	지방의회/시민단체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운영 방안

단 계	주요 내용		담당
예산 집행 단계	추진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예산부서) • 이행점검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예산부서/시민사회/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결산 및 환류 단계	성인지결산서 작성제출 (건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점검 	(총괄)결산부서 (사업)각 사업부서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지방의회 제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승인 및 도민 모니터링 • 의원 및 결산검사위원회 성인지 전문 역량 강화 지원 	지방의회/시민단체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성과 분석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 예산 편성에 반영 	(총괄)예산부서 (지원)성인지예산지원센터

※ 제주성인지예산지원센터(조례 제9조)는 향후 설립 추진을 전제로 함



감사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토론



좌 장 : 이경선(제주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좌재봉(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와 「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추진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대한 토론

민 기(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¹⁾은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국가재정법(제16조 제5호), 지방재정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50:50으로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 또한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 중립적(gender-neutral)으로 보이는 공공재정지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성 불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공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의 출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사회제도 속에 소외되어 온 여성에 대한 배려를 예산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보다는 ‘공공지출’(세출) 분야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출발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이후 ‘정책 수행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요인(gender factor)의 특성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 관점에서 예산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적 지침(initiatives)은 많이 논의되었으나,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추진 주체, 추진 범위, 분석 방법 등이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가 간 합의된 특정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각국이 직면한 성 불평등성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정부는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개정(2010년)을 통해 2013회계연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1) 성인지 예산이란 용어는 gender responsive budgets, gender-sensitive budgets, gender budgets, women's budget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주요 광역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9.87%로 다른 광역지방정부 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부산이 각각 8.67%와 8.61%, 그리고 서울 7.21%, 제주 2.14%로 지자체 간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컸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과 달리,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서울과 제주가 각각 333개와 23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기, 대전, 부산이 각각 201개, 162개, 137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광역지방정부 간에 성인지 예산의 비중과 사업 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 각 지방정부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이 모호함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과정에서도 각 부처에 시달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성인지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1] 2020년도 주요 광역지방정부 성인지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제주
예산(A)		419,845	137,805	67,827	317,377	67,581
성인지 예산	사업 수	333	137	162	201	238
	금액(B)	30,250	11,867	6,696	27,501	1,445
비율(=B/A)		7.21%	8.61%	9.87%	8.67%	2.14%

자료: 각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주: 본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계기준

8년차에 접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제도의 수혜자인 주민 모두에게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체감이나 확신이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희경 대표님의 발제 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용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 ‘이러한 제도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성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형식적 존재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

닌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법의 강행 규정에 의한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도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전체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에 투영되어야 한다.

둘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서가 공무원의 예산편성이나 결산 관련 업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을 털어내고 우리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규정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18개(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 포함)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예산관련 서류들 중 하나인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역량을 집중해서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성별수혜격차분석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결산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발제문에 나온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은 특정 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자는 생각으로 성인지와 무관한 사업들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예산 사업의 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여 성인지예산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집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 수와 예산액의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자치단체별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예산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명확한 선정기준의 수립과 함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성 요인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성인지 예산 운영 기법의 연마가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역사적으로 사회제도 속에 소외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배려를 예산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다. 우리사회는 서구사회보다 성 불평등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었고 성 불평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서구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 등을 통해 국제표준 정립하는데 국제사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성평등의 체감도를 높이고 성인지예산제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발전시킨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체감, 그리고 활성화 과제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前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성인지예산에 대한 체감도 총평

- 제주사회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장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음. 강경숙 센터장님 발제문에 언급됐듯이 2020년 도청 전체 예산 중 237건 금액 1305억으로 2016년 대비 건수는 크게 증가세가 없지만 금액은 두 배 가량 증가했음.
-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제주에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매해 도청의 예산안 제출과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제출되고 도의회에서 이를 토대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음.
-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조례’를 제정 등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성인지 예·결산 관련 분석 및 평가의 제도적 틀도 갖춰져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예산제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임.
- 집행부에서도 성인지 예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작성한 노력(실효성 보다는 업무 부담이라고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음)에 비하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의회에서도 여성 관련 상임위원회 정도에서 일부 관심을 갖는 경우는 있지만 성인지 예산서를 실제로 들여보고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도의원들은 많지 않음. (예·결산 제도의 사회적 약자임)
- 도의회 결산 검사 과정에서도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부실이 지적된 적은 있지만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나 활성화의 수준은 높다고 보이지 않음. (김희경 대표님 발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예결산제도의 부속자료 첨부자료 수준이거나 ‘무늬만 성인지’ 예결산인 경우도 수두룩함)
- 현재까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은 과거 제주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다루던 것이 여가원 출범과 함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성인지정책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공무원 교육, 컨설팅 등등)의 노력과 일부 여성단체의 고민이 반영되는 수준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됨.

- 유니버설 디자인 제도가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듯이 성인지 예산도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에도 사회적 인식은 부족해 보임.

■ 성인지예산 활성화를 위한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김희경 대표님 제안처럼 우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성인지 통계를 확산시켜 각 정책 영역별로 시민들이 쉽게 정보 접근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 책임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 및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강경숙 센터장의 발제문에서 과제로 제시된 공직사회 내부 슈퍼갑인 예산부서 차원의 성인지예산 총괄 운영,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조정기구 운영은 관건적인 문제임. 예를 들어 2021년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전체 예산 대비 최소 25%는 성인지 예산으로 한다는 목표치 설정하고 원희룡 지사 임기 중인 2022년까지 30%로 한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중요함.
 - 성주류화 예산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함께 BSC 반영도 성인지 예산 정착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되며, 성평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활성화 과제

1. 강경숙 센터장님 지적대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실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특화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전체 교육에서 한 꼭지 정도 추가해서 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2. 현재 200억 수준(2021년 참여 예산 삭감 소문도 있음)인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쿼터제로 명문화함. 심사 기준표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점수를 지속적으로 의무화하고 배점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결산과정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함.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변경됨. 현재 원희룡 도정의 게으름으로 제주특별법과 참여예산 조례가 이 취지에 맞게 변경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편성, 집행, 평가(결산) 과정 전체에 걸쳐 매해 수립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제대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영, 운용이 필요함.

4.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참여예산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함)해서 사회복지 예산 참여예산제, 청년 참여예산제, 1차산업 참여예산제, 성인지예산 참여예산제 등을 가능하도록 함.
5.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43개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한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도 전체 예산으로 확대해서 매해 도민들이 제주도 편성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예산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매해 도예산편성지침을 비롯해서 예산 과정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
6. 예산편성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총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배분에 대한 효율성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음.

■ 공직사회를 비롯한 성인지 예산제도 사회화를 위한 과제

1. 공직사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부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중장기 목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읍면동 평가과정까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평가지표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공분야에서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계약 준수제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 공동조달사업체 등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재위탁 또는 계약시 가점 등 부여 방안 검토 필요
4. 성인지 예산이 실제 도민사회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홍보 및 전파,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모범적 사례 발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매해 43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 사례도 발굴 전파하고 있음) 및 전파 등 노력이 필요함.

제6회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토론문

좌재봉(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

- 성인지예산의 최근 5년간의 동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도 예산 총액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2.5%로 규모가 다소 축소된 바 있어, 2021년도는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²⁾을 2020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205개 부서 중 146개 부서(71%)에서 1개 이상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제주시청(읍면동포함) 79%, 서귀포시청(읍면동포함) 76%,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61%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에 따라 기존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성인지예산으로 누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대폭 포함하여, 총 약 350개 사업(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사업·자치단체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안내하였다. 그 중 성별영향평가가 75%, 양성평등사업이 20%, 자치단체특화사업이 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일몰되는 사업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실무심사를 거치면 사업규모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종 도의회 제출 전까지 사업의 규모와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겠다.

○ 사업부서와의 공감대 형성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도 전반의 이해도 제고 필요성

- 성인지예산서 분석과 심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는 사업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컨설턴트마다 성인지예산제도 관점이 사업부서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컨설턴트와 사업부서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가 진행된다면 성인지예산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보다도 더욱 세분화된 제주형 성인지예산제 지침 및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에서 올해 7월에 그 과업을

2)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연구(강경숙, 신승배), 2020.7. 참조

상황리에 마무리해주셨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무적인 내용을 조금 보태어서 지침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

- 성인지예산 편성 작업의 경우, 해당연도의 성별영향평가 대상목록이 확정되는 대로 성평등 부서로부터 양성평등사업을 선제적으로 제공받아, 예산부서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을 본격적인 성인지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하는 7~8월 전에 사업부서와 대상목록을 확정짓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성인지 예산 편성 시기에는 사업부서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활한 성인지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나아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금년도까지는 예산편성 과정 중에 컨설팅을 진행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전면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서에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 교육을 상반기 1회, 예산편성지침교육 시 1회, 총 2회 정도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중장기적인 성인지예산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지원센터’의 경우 전례 없는 재정위기로 인해 당장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식 센터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여성가족연구원의 협조를 구해 소규모 용역 등을 진행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 성인지예산조례에 근거를 둔 성인지예산위원회는 현재 정책기획관실에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를 신청해둔 상태이며, 10월 중으로 구성을 완료하여 우리도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심의와 운영방향 정립 등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과 연계하여 적절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도입

- 성인지예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서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는 것에는 부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어,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적절한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부서의 협조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향상 및 내실화 방안 모색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성과 향상 및 내실화 방안 모색

김경학(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1. 들어가며

- 2013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 작성된 이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궁극적으로 성차별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함
- 그러나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그 간의 시간 동안 성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함
- 첫 번째 발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1) 성인지예산제도 수용성 확대 문제, 2) 성인지예산서 부실 작성의 문제, 3) 예산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화 문제 등은 성인지예산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판단됨
-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인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성과관리체계 구축, 의회와 시민사회 협력 등 또한 사실 이미 제시되어 재차 강조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여짐
- 이러한 현실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반성의 말씀을 추가한다면 의회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심사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임
 - 물론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의 안착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제도는 아님
- 이번 토론회에서 공직 내부의 내실화 방안은 여러 토론자가 말씀하실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의회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의 성인지예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해보고자 함

2. 성평등 목표의 모호성 심화

- 성평등 목표는 당해 연도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함
- 최근 5년간 성평등 목표를 살펴보면 2013~2015년 여성 능력 개발·여성 여가 욕구

등 ‘여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2016년 이후에는 여성 이외 노인, 빈곤층, 안전 등의 영역으로 확장됨

-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예산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바, 여성 이외의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목표의 범위 확대에 의해 복지정책 전반이 성인지 예산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예: 버스시설물 운영관리/대중교통지원사업 등)
- 특히 2016년, 2017년에는 성평등 목표가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없이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목표는 한 해 동안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설정되어야 하며, 결산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임

3. 지방의회 성인지예산 심사 활성화 방안

- 지방의회에서 “성인지 예산결산서에 대한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일선 공무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충실한 예산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예산 심의는 궁극적으로 예산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충실한 심의”에 앞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즉 「충실한 예산서 작성이 충실한 심의로 이어지고, 충실한 심의가 다시 충실한 예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실제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을 근거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 본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심사과정에서 의원의 질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개선하는 주체와 개선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임
- 예산 심사는 한정된 의사일정 안에 상당히 많은 부서의 예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심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이러한 시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졌으나,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물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차 질의를 통해 지적해야 하는 것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타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빠듯한 시간을, 같은 주제를 중복하여 질의하는데 할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반영이 되어야 새로운 주제의 질의가 이어지는 등 의회 심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됨
- “왜 질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을 보면, 개별 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각각 작성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수합하여 하나의 예산서로 묶여짐
- 따라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주체가 개별 부서인지, 예산서 틀을 만드는 예산담당관실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즉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나가는 후속조치를 누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사업부서나 예산담당관실은, 다른 업무에도 바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의 문제를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 물론 해당 사업부서나 예산담당관에서 기본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하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 성별영향평가센터 등 전문가집단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의회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행정 내부로 환류시켜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속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직접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면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거나 반영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여짐
- 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지 정책의 발굴과 확산, 그리고 의회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행정 내부로 환류시키는 역할이 필요함

4. 나가며

- 의회, 공무원, 전문가 집단 등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 성인지예산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실제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의 취지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 심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함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